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보행 및 도시환경개선을 위하여 「도로법」 제38조, 제8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조에 따라 보도상영업시설물의 감축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도상영업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별표에서 정하는 규격에 따라 설치된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가로판매대"란 신문, 잡지, 음료, 과자 등의 판매 및 교통카드의 충전과 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보도에 설치된 시설물을 말한다.
3. "구두수선대"란 구두를 수선하거나 닦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보도에 설치된 시설물을 말한다.
4. "도로"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도로관리청인 도로를 말한다.
5. "보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안전표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신체장애인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6. "운영자"란 도로점용허가(이하 "점용허가"라 한다)를 받아 이 조례에 따른 시설물을 사용·수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점용허가) ① 시설물을 계속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신청서를 점용허가 기간의 만료일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점용허가를 받은 운영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증을 내준다. 이 경우 점용허가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도로점용허가 및 시설물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4조에 따라 보도상영업시설물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한다.

④ 도로점용 허가기한이 2007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운영자는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부동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임차보증금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금융재산을 합하여 2억원 미만인 자에 한하여 1회 1년의 범위 내에서 2회에 한정하여 갱신을 허가하되,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의 갱신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운영자 본인 및 배우자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
 2. 부동산 및 금융재산 조회에 대한 동의서
 3. 임대차 계약서
- ⑥ 운영자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는 때에는 제소전 화해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2를 제4조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시설물의 도로점용허가, 허가기간, 허가갱신, 적정 수량, 규격, 설치장소 및 운영자 자격기준 등을 정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위원 중 7명은 법조인·공인회계사·감사전문가·언론인·사회복지전문가·시민단체대표 및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등 사회 각계의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
2. 나머지 3명은 관련 공무원으로 한다.
3.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2)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도시교통본부장으로 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⑦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고, 안건심의 또는 그 밖의 정책검의와 관련하여 조사, 연구 및 자료의 수집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총전의 제4조부터 12조까지를 각각 제5조부터 제13조까지로 하여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점용허가 갱신의 제한) 시장은 제3조제4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갱신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운영자가 사망한 경우(배우자 승계하는 경우에는 제외)
2. 점용허가의 권리나 의무를 양도한 경우
3. 제3조제6항에 따라 제소전 화해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대부계약) ①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시설물 대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과 해당 시설물에 대한 대부계약을 맺어야 한다. 이 경우 운영자는 대부계약을 맺기 전에 시설물에 대한 손해보상 보험계약을 맺고 그 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②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물의 화재, 파손 및 훼손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운영자가 원래의 상태대로 복구하여야 한다.
- ③ 대부계약의 신청·기간 또는 갱신 등은 제3조를 준용한다.

제7조(시설물 관리) ① 시장은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시설물관리 현황을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운영자 준수사항을 일반시민이 보기 쉽도록 시설물에 부착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운영자증명서를 운영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 ② 시장은 시설물의 운영 상태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여 관계법령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 운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시민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거나 도시경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위치를 조정하거나 교체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행위의 금지) ① 운영자는 도로점용허가 및 시설물 대부로 인한 권리나 의무를 제3자에게 전매, 전대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임의로 점용허가 장소 및 시설물의 구조를 변경할 수 없다.

- ② 운영자는 시설물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시장은 운영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1. 허가된 점용장소 또는 면적 이외의 도로 등에 상품 및 그 밖의 물건을 적치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2. 가로판매 대에서 금지되는 행위

가. 의약품 및 화공약품 등을 취급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나. 음란·퇴폐를 조장하는 서적 또는 그 밖에 미풍·양속을 해치는 물품을 취급하거나 판

매하는 행위

다. 음식물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행위. 다만, 가로판매대의 운영자는 전기조리기구를 이용하여 보온을 요하는 핫도그, 햄버거, 샌드위치, 건포(乾脯)류 및 김밥의 판매행위에 한정하여 시장의 사전 승인이 있는 경우 판매를 허용함.

라. 그 밖에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

3. 구두수선대에서 금지되는 행위

가. 구두를 닦거나 수선하는 이외의 물품을 취급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나.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제9조(허가취소) 시장은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7조제3항에 따른 시설물의 위치 조정 및 교체 등을 거부하는 경우

2. 제8조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 제8조제2항에 따른 동일한 위반행위로 2회의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복하는 경우

제10조(시설물 철거) ① 시설물의 설치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을 철거하여야 한다.

1. 점용허가 기한이 경과된 경우

2. 제3조에 따라 점용허가의 갱신이 아니 되는 경우

3. 제9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철거를 지정한 기한 내에 설치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면 「도로법」 제65조에 따라 행정대집행의 적용특례에 따른 절차와 방법으로 철거한다.

③ 누구든지 조례 제3889호 시행일을 기준으로 허가된 시설물 이외에 세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허가 취소되어 철거된 시설물을 대신하는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제11조(처분의 사전통지) 시장은 제8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 제9조에 따른 허가취소 및 제10조에 따른 시설물 철거 등의 처분을 하려면 사전통지 등 「행정절차법」에서 정하는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점용료 등 부과·징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운영자에게 점용료 및 대부료를 부과·징수한다.

1. 점용료 :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라 산정된 금액

2. 대부료 : 해당 시설물 가액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다만, 2000년 1월 1일 이후에 교체 또는 정비한 시설물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 가액의 100분의 7로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점용료 및 대부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점용료의 경우에는 「도로법」 및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를, 대부료의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를 따른다.

제13조(사무의 위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장의 사무는 시설물이 위치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제3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및 대부계약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자치구의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제8조부터 제11조에 따른 시정명령·허가취소·시설물 철거 및 처분의 사전통지에 관한 사항

4. 제12조에 따른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 및 대부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 등
종전의 제13조를 삭제한다.

별표 1을 별표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각 호의 외의 부분 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서식 제1호 본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같은 호 단서 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조에 따라”로 하며, 제3호가목4)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제5호 단서 중 “1인”을 “1명”으로 하며, 제7호라목 중 “상품·기타의”를 “상품, 그 밖의”로 하고, 제9호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관련현황란 중 “제6조”를 “제7조”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제6조”를 “제7조”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제6조”를 “제7조”로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면)

도로 점용 허가(시설물 대부) 신청서(제3조 관련)		처리기간		
※ 시설물 대부신청서는 해당되는 운영자에 한합니다.		5 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점용(대부) 목적		⑤취급품목		
⑥점용(대부) 장소		⑦점용면적		
⑧점용(대부)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일(1년 이내)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6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 및 시설물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 구청장 귀하

수수료
1,000원

(뒷면)

근거법규	<p>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제38조제1항,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3조)</p> <p>지방단치단체의 소유인 시설물은 사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p>
유의사항	<p>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 (「도로법」 제94조 및 제97조)</p> <p>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38조제1항 및 제101조)</p> <p>시설물을 대부받은 자는 대부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p> <p>도로점용 허가 및 시설물 대부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6조)</p>

(다음 페이지에 계속)

(별지 제3호서식)

보도상영업시설물 대부계약서(제6조 관련)

○○○ 구청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가로판매대 등 보도상영업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대부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갑”이 시설물을 “을”에게 대부하고 “을”이 이를 사용·운영함에 있어 “갑”과 “을”的 권리·의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부 목적물) “갑”이 “을”에게 대부하는 목적물은 다음과 같다.

시설물종류 ()	관리번호	○○○○년 - ○○구 - ○○○
	설치장소	서울특별시 구 동(로) 가 번지 호 앞 (주요건물명 기재)
	시 설 물 규 격	가로 (m)×세로 (m)×높이 (m)
	취급품목	

제3조(대부기간) 대부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4조(대부료 등) ① 대부료는 연간 원으로 한다. 다만, “을”이 원하는 경우 대부금액의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기별로 분할하여 납부 할 수 있으며, 월할 계산에 있어 1 월미만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② 대부료의 납기는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90일 이내로 하되, 납부기한 경과후의 연체요율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5조(손해보험가입 등) ① “을”은 시설물을 운영함에 있어 화재·파손 및 훼손 등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을”的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비용부담을 보전하기 위하여 “을”은 “갑”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 시설물 가액의 상당액에 해당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하고 그 종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자 준수사항) “을”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보존 책임과 부담을 지며 시설물을 운영·관리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2조에서 정한 대부목적 이외의 행위 금지
2. 시설물의 전매·전대·질권설정 및 연고권의 주장 금지
3. 시설물의 변경행위 금지
4. “을” 이외의 자가 시설물을 운영하는 행위금지. 다만, 시설물 대부계약자 직계가족 중 1 명을 정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자 증명서에 등재한 후 대부계약자와 교대로 운영 가능
5. 시설물 외부(지붕포함)에 상품이나 그 밖에 물건의 전열·적치 금지
6. 시설물 외부 수시 세척 등 주변 청결유지
7. 도로점용허가증, 대부계약서, 운영자증명서, 사업자등록증을 시설물내에 상시 비치하고 관계공무원 확인시 제시
8. 그 밖에 “갑”的 조례 및 법령 등에서 금지하는 행위

제7조(취급 금지품목) “을”은 시설물에서 다음 각 호의 품목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의약품 및 화공약품 등을 취급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2. 음란·퇴폐를 조장하는 서적 또는 그 밖에 미풍·양속을 해치는 물품을 취급하거나 판

매하는 행위

3. 음식물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행위. 다만, 가로판매대의 운영자는 전기조리기구를 이용하여 보온을 요하는 핫도그, 햄버거, 샌드위치, 건포(乾脯)류 및 김밥의 판매행위에 한정하여 “갑”의 사전 승인이 있는 경우 판매를 허용함.

4. 그 밖에 다른 법령 및 “갑”的 조례 등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

제8조(공과금) “을”은 시설물 운영으로 인한 전기요금 등 공과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민·형사상의 책임) “을”은 시설물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을”的 귀책 사유로 인하여 “갑”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아 이를 배상하였을 경우 “을”은 “갑”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을”的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계약의 갱신) 제6조에 따른 대부기간이 만료되어 대부 시설물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부만료 30일전까지 대부계약을 신청하되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도로점용허가 기한까지만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제11조(지도·감독) ① “갑”은 관계공무원이 시설물 운영상태를 점검하여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의 해제·해지)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을”에 대하여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갑”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등을 하지 못한다.

1. “갑”的 조례 및 법령 등에 위반하거나 이 계약에 따른 운영자 준수사항 또는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2. 허위증빙서류의 제출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물을 대부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제13조(대부시설물 반환)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도로점용허가 갱신기한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에는 “을”은 대부재산을 원상회복하여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4조(제소전 화해조서) ① “갑”과 “을”은 대부계약 내용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일부터 10일이내에 “갑”과 “을”的 화해사항을 “갑”的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확인 후 화해조서 정본을 각각 보관한다.

② 화해비용은 “갑”과 “을”이 각각 2분의 1씩 부담한다.

제15조(계약내용의 해석) 이 계약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상호 이견이 있거나 이 계약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로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갑”的 조례 등 관련규정에 따른다.

제16조(계약의 효력 등) ① 이 계약의 효력은 체결일부터 발생하고 계약사항의 이행 완료시 까지 효력이 있다.

② 이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계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대부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임대인(갑) : 서울특별시 ○○○구 청장 ○○○ (인)

임차인(을) : 서울특별시 구 동(로) 가 번지 호

주민등록번호 :

성명 :

(인)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보행 및 도시환경개선을 위하여 「도로법」 제38조, 제8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p> <p><u>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도상영업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의 감축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보도상영업시설물"이란 별표 1</u>에서 정하는 규격에 따라 설치된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가로판매대"란 신문, 잡지, 음료, 과자 등의 판매 및 교통카드의 충전과 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보도에 설치된 시설물을 말한다. 3. "구두수선대"란 구두를 수선하거나 닦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보도에 설치된 시설물을 말한다. 4. "도로"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도로관리청인 도로를 말한다. 5. "보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둘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보행 및 도시환경개선을 위하여 「도로법」 제38조, 제8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p> <p><u>제6조에 따라 보도상영업시설물의 감축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보도상영업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별표에서 정하는 규격에 따라 설치된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u> 2. "가로판매대"란 신문, 잡지, 음료, 과자 등의 판매 및 교통카드의 충전과 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보도에 설치된 시설물을 말한다. 3. "구두수선대"란 구두를 수선하거나 닦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보도에 설치된 시설물을 말한다. 4. "도로"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도로관리청인 도로를 말한다. 5. "보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둘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

다. 이하 같다),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신체 장애인용 의자차 포함)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6. “운영자”란 도로점용허가(이하 “점용허가”라 한다)를 받아 이 조례에 따른 시설물을 사용·수익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운영자”라 함은 도로점용허가(이하 “점용허가”라 한다)를 득하여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시설물을 사용·수익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점용허가) ① 시설물을 계속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신청서를 점용허가 기간의 만료일로부터 기산하여 30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점용허가를 받은 운영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증을 내준다. 이 경우 점용허가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도로점용허가 및 시설물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3조의2에 따라 보도상영업시설물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한다.

④ 도로점용 허가기한이 2007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운영자는 본인

다. 이하 같다), 안전표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신체 장애인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6. “운영자”란 도로점용허가(이하 “점용허가”라 한다)를 받아 이 조례에 따른 시설물을 사용·수익하는 사람을 말한다.

〈 쟈 제 〉

제3조(점용허가) ① 시설물을 계속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신청서를 점용허가 기간의 만료일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점용허가를 받은 운영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증을 내준다. 이 경우 점용허가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도로점용허가 및 시설물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4조에 따라 보도상영업시설물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한다.

④ 도로점용 허가기한이 2007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운영자는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부동산,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제1호다목에 따른 임차보증금 및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금융 재산을 합하여 2억원 미만인 자에게 만 1년의 범위 내에서 2회에 한정하여 갱신을 허가하되,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의 갱신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운영자 본인 및 배우자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
2. 부동산 및 금융재산 조회에 대한 동의서
3. 임대차 계약서

⑥ 운영자가 제1항 규정에 의한 허가를 신청하는 때에는 제소전 화해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2(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시설물의 도로점용허가, 허가 기간, 허가갱신, 적정수량, 규격, 설치장소 및 운영자 자격기준 등을 정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시

및 배우자 소유의 부동산,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제1호다목에 따른 임차보증금 및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금융재산을 합하여 2억원 미만인 자에 한하여 1회 1년의 범위 내에서 2회에 한정하여 갱신을 허가하되,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의 갱신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운영자 본인 및 배우자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
2. 부동산 및 금융재산 조회에 대한 동의서
3. 임대차 계약서

⑥ 운영자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는 때에는 제소전 화해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시설물의 도로점용허가, 허가 기간, 허가갱신, 적정수량, 규격, 설치장소 및 운영자 자격기준 등을 정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장이

장이 임명한다.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위원중 7명은 법조인·공인회계사·감사전문가·언론인·사회복지전문가·시민단체대표·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등 사회 각계의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	1. 위원 중 7명은 법조인·공인회계사·감사전문가·언론인·사회복지전문가·시민단체대표 및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등 사회 각계의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
2. 나머지 3명은 관련 공무원으로 한다.	2. 나머지 3명은 관련 공무원으로 한다.
3.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2)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도시교통본부장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2)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도시교통본부장으로 한다.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u>3분의 2</u> 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u>3분의 2</u>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u>3분의 2 이상</u> 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u>3분의 2 이상</u>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고, 안건심의 또는 기타 정책견의와 관련하여 조사, 연구 및 자료의 수집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⑦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고, 안건심의 또는 그 밖의 정책견의와 관련하여 조사, 연구 및 자료의 수집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p>제4조(점용허가 개신의 제한) 시장은 <u>제3조제4항의 규정에</u>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개신하지 아니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운영자가 사망한 경우(배우자 승계하는 경우에는 제외) 2. 점용허가의 권리나 의무를 양도한 경우 3. 제3조제6항에 따라 제소전 화해 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p>제5조(점용허가 개신의 제한) 시장은 <u>제3조제4항에</u>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개신하지 아니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운영자가 사망한 경우(배우자 승계하는 경우에는 제외) 2. 점용허가의 권리나 의무를 양도한 경우 3. 제3조제6항에 따라 제소전 화해 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p>제5조(대부계약) ①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u>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시설물 대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 서식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u> 시장과 해당 시설물에 대한 대부계약을 맺어야 한다. 이 경우 운영자는 대부계약을 맺기 전에 <u>재산</u>에 대한 손해보상 보험계약을 맺고 그 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p> <p>②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물의 화재, 폭손 및 훼손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운영자가 원래의 상태대로 복구하여야 한다.</p> <p>③ 대부계약의 <u>신청·기간·개신</u> 등은 제3조를 준용한다.</p>	<p>제6조(대부계약) ①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u>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시설물 대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u> 시장과 해당 시설물에 대한 대부계약을 맺어야 한다. 이 경우 운영자는 대부계약을 맺기 전에 <u>시설물</u>에 대한 손해보상 보험계약을 맺고 그 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p> <p>②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물의 화재, 폭손 및 훼손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운영자가 원래의 상태대로 복구하여야 한다.</p> <p>③ 대부계약의 <u>신청·기간 또는 개신</u> 등은 제3조를 준용한다.</p>
<p>제6조(시설물 관리) ① 시장은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u>별지</u></p>	<p>제7조(시설물 관리) ① 시장은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u>별지</u></p>

제4호 서식에 따라 시설물관리 현황을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운영자 준수사항을 일반시민이 보기 쉽도록 시설물에 부착하고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운영자증명서를 운영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② 시장은 시설물의 운영 상태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여 관계법규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 운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거나 도시경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위치를 조정하거나 교체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행위의 금지) ① 운영자는 도로 점용허가 및 시설물 대부로 인한 권리나 의무를 제3자에게 전매, 전대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임의로 점용허가 장소 및 시설물의 구조를 변경할 수 없다.

② 운영자는 시설물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시장은 운영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1. 허가된 점용장소 또는 면적 이외의 도로 등에 상품 및 기타의 물건을 적치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2. 가로판매대에서 금지되는 행위

제4호서식에 따라 시설물관리 현황을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운영자 준수사항을 일반시민이 보기 쉽도록 시설물에 부착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운영자증명서를 운영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② 시장은 시설물의 운영 상태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여 관계법령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 운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거나 도시경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위치를 조정하거나 교체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행위의 금지) ① 운영자는 도로 점용허가 및 시설물 대부로 인한 권리나 의무를 제3자에게 전매, 전대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임의로 점용허가 장소 및 시설물의 구조를 변경할 수 없다.

② 운영자는 시설물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시장은 운영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1. 허가된 점용장소 또는 면적 이외의 도로 등에 상품 및 그 밖의 물건을 적치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2. 가로판매대에서 금지되는 행위

- 가. 의약품 및 화공약품 등을 취급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 나. 음란·퇴폐를 조장하는 서적 또는 그 밖에 기타 미풍·양속을 해치는 물품을 취급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 다. 음식물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행위 (단, 가로판매대의 운영자는 전기조리기구를 이용하여 보온을 요하는 핫도그, 햄버거, 샌드위치, 건포(乾脯)류 및 김밥의 판매 행위에 한정하여 시장의 사전 승인이 있는 경우 판매를 허용)
- 라. 그 밖에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
- 3. 구두수선대에서 금지되는 행위
 - 가. 구두를 닦거나 수선하는 이외의 물품을 취급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 나.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제8조(허가취소)** 시장은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6조제3항에 따른 시설물의 위치 조정 및 교체 등을 거부하는 경우
 2. 제7조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 제7조제2항에 따른 동일한 위반

- 가. 의약품 및 화공약품 등을 취급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 나. 음란·퇴폐를 조장하는 서적 또는 그 밖에 미풍·양속을 해치는 물품을 취급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 다. 음식물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행위. 다만, 가로판매대의 운영자는 전기조리기구를 이용하여 보온을 요하는 핫도그, 햄버거, 샌드위치, 건포(乾脯)류 및 김밥의 판매 행위에 한정하여 시장의 사전 승인이 있는 경우 판매를 허용함.
- 라. 그 밖에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
- 3. 구두수선대에서 금지되는 행위
 - 가. 구두를 닦거나 수선하는 이외의 물품을 취급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 나.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제9조(허가취소)** 시장은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7조제3항에 따른 시설물의 위치 조정 및 교체 등을 거부하는 경우
 2.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지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 제8조제2항에 따른 동일한 위반

<p>행위로 2회의 시정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복하는 경우</p> <p>제9조(시설물 철거) ① 시설물의 설치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을 철거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점용허가 기한이 경과된 경우.</u> 다만, 제3조제3항에 따라 운영자가 선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u>제3조의 규정에 따라 점용허가의 갱신이 아니 되는 경우</u> 3. <u>제8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되는 경우</u> <p>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철거를 지정한 기한 내에 설치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면 「도로법」 제65조에 따라 행정대집행의 적용특례에 따른 절차와 방법으로 철거한다.</p> <p>③ 누구든지 <u>이 조례 시행일</u>을 기준으로 허가된 시설물 이외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허가 취소되어 철거된 시설물을 대신하는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p> <p>제10조(처분의 사전통지) 시장은 <u>제7조제2항</u>에 따른 시정명령, <u>제8조</u>에 따른 허가취소 및 <u>제9조</u>에 따른 시설물 철거 등의 처분을 하려면 사전통지 등 「행정절차법」에서 정하는 절차</p>	<p>행위로 2회의 시정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복하는 경우</p> <p>제10조(시설물 철거) ① 시설물의 설치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을 철거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점용허가 기한이 경과된 경우</u> 2. <u>제3조에 따라 점용허가의 갱신이 아니 되는 경우</u> 3. <u>제9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되는 경우</u> <p>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철거를 지정한 기한 내에 설치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면 「도로법」 제65조에 따라 행정대집행의 적용특례에 따른 절차와 방법으로 철거한다.</p> <p>③ 누구든지 <u>조례 3889호 시행일</u>을 기준으로 허가된 시설물 이외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허가 취소되어 철거된 시설물을 대신하는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p> <p>제11조(처분의 사전통지) 시장은 <u>제8조제2항</u>에 따른 시정명령, <u>제9조</u>에 따른 허가취소 및 <u>제10조</u>에 따른 시설물 철거 등의 처분을 하려면 사전통지 등 「행정절차법」에서 정하는 절</p>
---	---

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점용료등 부과·징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운영자에게 점용료 및 대부료를 부과·징수한다.

1. 점용료 :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라 산정된 금액

2. 대부료 : 해당 시설물 가액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다만, 2000년 1월 1일 이후에 교체 또는 정비한 시설물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 가액의 100분의 7로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점용료 또는 대부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점용료의 경우에는 「도로법」 및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대부료의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제12조(사무의 위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장의 사무는 시설물이 위치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및 대부계약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자치구의 위

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점용료 등 부과·징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운영자에게 점용료 및 대부료를 부과·징수한다.

1. 점용료 :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라 산정된 금액

2. 대부료 : 해당 시설물 가액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다만, 2000년 1월 1일 이후에 교체 또는 정비한 시설물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 가액의 100분의 7로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점용료 및 대부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점용료의 경우에는 「도로법」 및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를, 대부료의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를 따른다.

제13조(사무의 위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장의 사무는 시설물이 위치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제3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및 대부계약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자치구의 위원회 설

<p>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p> <p>2. <u>제6조</u>에 따른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p> <p>3. <u>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u> 시정명령·허가취소·시설물 철거 및 처분의 사전통지에 관한 사항</p> <p>4. <u>제11조</u>에 따른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 및 대부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 등</p> <p><u>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p>	<p>치·운영에 관한 사항</p> <p>2. <u>제7조</u>에 따른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p> <p>3. <u>제8조부터 제11조에 따른</u> 시정명령·허가취소·시설물 철거 및 처분의 사전통지에 관한 사항</p> <p>4. <u>제12조</u>에 따른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 및 대부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 등</p> <p><u><삭 제></u></p>
--	---